

# ※ 첨부 1

## ■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3단계 판단법)

구분	방법				
위험성 결정	1. 근로자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할 부분은 반드시 반영 할 것 2. 평가대상자의 경험 또는 토의를 통하여 위험성 등급 결정 3. 작업장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관리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4. 위험등급 '상' 에 대해서는 담당자 선정하여 중점관리 및 F/B 실시 5. 위험성평가 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아래 판단기준과 달리하여 등급이 결정될수 있음				
	위험성 등급	위험수준	판단 기준	관리기준	허용 유무
	상 (★★★)	중대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발생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수 있는 위험</li> <li>▪ 산업안전보건법상 법규 준수가 어려운 경우</li> <li>▪ 고위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락, 협착/충돌, 낙하, 붕괴)</li> </ul>	최종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작성후 담당자 지정하여 중점위험관리 실시	허용 불가
	중 (★★)	일반적인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발생시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li> <li>▪ 사고사례 및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li> </ul>	안전시설 설치, 관리감독자 배치, 안전교육 실시 등 관리적 대책 시행	조건부 허용
하 (★)	경미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3일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li> </ul>	위험표지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일상안전보건관리	허용 가능	

### ✓ 위험성평가 근로자 의견서


협력회사	공종	작업날짜	작성일	팀장
00건설	형틀	2023.2.6 ~ 2023.2.10	2023. 2. 3	홍길동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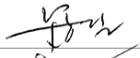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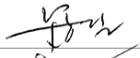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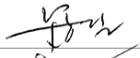



위험요인	관리대책	■ 참석자	
		이름	서명



■ 위험등급 기준표 (공유 및 협의)	위험성 등급	위험수준	판단 기준	관리기준	허용 유무
	상(★★★★)	중대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발생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수 있는 위험</li> <li>산업안전보건법상 법규 준수가 어려운 경우</li> </ul>	최종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작성후 담당자 지정하여 중점위험관리활동 실시	허용 불가
중(★★)	일반적인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발생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li> <li>사고사례 및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li> </ul>	안전시설 설치, 관리감독자 배치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조건부 허용	
하(★)	경미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li> </ul>	위험표지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일상관리가 필요한 위험	허용 가능	

# ✓ 위험성평가 근로자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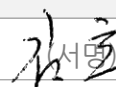
협력회사	공종	작업날짜	작성일	팀장
휘강건설	골조_직영	2024.01.26 ~ 2024.02.01	2024. 01. 23	양창수 

위험요인	관리대책	■ 참석자										
높어치기 구간 및 단부에서 안전고리 미체결로 인한 작업중 근로자 추락	1. TBM시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및 안전대걸이시설 설치 안전조치 확인후 작업 2. 구조물 상부 또는 단부구간 작업시 작업자 안전벨트 걸고리 체결하고 작업	<table border="1"> <thead> <tr> <th>이름</th> <th>서명</th> </tr> </thead> <tbody> <tr> <td>문홍필</td> <td></td> </tr> <tr> <td>유정기</td> <td></td> </tr> <tr> <td>김익</td> <td></td> </tr> <tr> <td>장성근</td> <td></td> </tr> </tbody> </table>	이름	서명	문홍필		유정기		김익		장성근	
이름	서명											
문홍필												
유정기												
김익												
장성근												
혹한기 외부 작업시에 동상,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 심혈관계질환 발생	작업 전/중/후 체조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 이완하고 작업 중 적절한 휴식공간 제공											
불연소 연료에 의해 과다하게 발생된 일산화탄소로 인해 양생작업을 점검하던 작업자 중독으로 쓰러짐	1. 동절기 양생작업에 대한 밀폐공간 작업허가 관리 통제계획 수립 2. 일산화탄소의 발생 경보기 설치 및 휴대용 측정기 지참 후 현장 진입 3.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휴대용 산소호흡기 등의 준비를 통한 비상 대응											
양생용 천막 또는 가연성 자재 인근에 설치된 열화로의 불티가 옮겨 붙어 화재 발생	1. 밀폐공간의 열화로 가열 시 중독 사고 위험과 함께 화기의 옮겨 붙음에 대한 위험 평가 2. 열화로 점화구간 반경 내 가연성 물질의 제거 3. 소화기의 적정 수량 비치 및 즉각 대응 체계 구축											
후진으로 펌프카까지 진입한 믹서트럭의 브레이크가 해제되어 펌프카 운전 보조작업 진행 중이던 작업자를 치임	1. 믹서트럭 후진 한계점을 지정하고 후진 밀림방지 췌기를 설치 운영 2. 혼잡한 장비 주변 작업자는 식별되는 안전조끼를 착용해야하며, 장비진입 시 안전장소 이동 3. 믹서트럭 후진 장소에 머무르는 작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 위험등급 기준표  
(공유 및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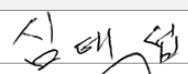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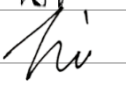

위험성 등급	위험수준	판단 기준	관리기준	허용 유무
상(★★★)	중대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발생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수 있는 위험</li> <li>산업안전보건법상 법규 준수가 어려운 경우</li> </ul>	최중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작성후 담당자 지정하여 중점위험관리활동 실시	허용 불가
중(★★)	일반적인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발생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li> <li>사고사례 및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li> </ul>	안전시설 설치, 관리감독자 배치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조건부 허용
하(★)	경미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li> </ul>	위험표지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일상관리가 필요한 위험	허용 가능

# ✓ 위험성평가 근로자 의견서

협력회사	공종	작업날짜	작성일	팀장
휘강건설	골조_형틀	2024.01.26 ~ 2024.02.01	2024. 01. 23	김 호 

위험요인	관리대책
꿇어치기 구간 및 단부에서 안전고리 미체결로 인한 작업중 근로자 추락	1.TBM시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및 안전대걸이시설 설치 안전조치 확인후 작업 2.구조물 상부 또는 단부구간 작업시 작업자 안전벨트걸고리 체결하고 작업
혹한기 외부 작업시에 동상,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 심혈관계질환 발생	작업 전/중/후 체조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 이완하고 작업 중 적절한 휴식공간 제공
1.용접/용단 중 불티 비산으로 화재(하부층, 구조물 틈새등) 2.주변/인화/가연물에 의한 화재	1.작업장 주위 소화기 비치 2.용접기 미사용시 전원 차단 3.불티비산 방지 조치, 틈새막기(불티비산 방지포등) 4.상하동시작업, 간섭작업 금지, 감시자 배치 5.인화/가연성 물질 제거, 곤란시 이격 및 불티 차폐
동근톱 사용중 회전하는 톱날에 손가락이 베일 위험	1. 동근톱사용 작업전 작동상태 확인하고 톱날에 인접하여 작업시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톱날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한다 2. 동근톱 날접촉방지 커버 부착 및 유지상태 확인후 작업하도록 한다
거푸집 조립을 위해 망치를 이용해 작업중 튀어오른 핀이나 못등 파편에 눈에 상해를 입을 위험	1. 망치를 이용한 작업이나 비산물이 발생하는 작업 진행시 보안경 안면보호구등을 착용하고 작업 한다 2.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한다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작업자가 안전난간 넘어가던 중 발을 헛디딤 떨어짐 위험	1. 단차구간 가설계단 우선 설치 후 통행 실시 2. 지정통로 외 통행 금지

### ■ 참석자

이름	서명
심태섭	
전범수	
고학규	
태송림	

### ■ 위험등급 기준표 (공유 및 협의)

위험성 등급	위험수준	판단 기준	관리기준	허용 유무
상(★★★)	중대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발생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수 있는 위험</li> <li>산업안전보건법상 법규 준수가 어려운 경우</li> </ul>	최종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작성후 담당자 지정하여 중점위험관리활동 실시	허용 불가
중(★★)	일반적인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발생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li> <li>사고사례 및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li> </ul>	안전시설 설치, 관리감독자 배치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조건부 허용
하(★)	경미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li> </ul>	위험표지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일상관리가 필요한 위험	허용 가능

# ✓ 위험성평가 근로자 의견서

협력회사	공종	작업날짜	작성일	팀장
휘강건설	골조_철근	2024.01.26 ~ 2024.02.01	2024. 01. 22	고 기 주



위험요인	관리대책
꿇어치기 구간 및 단부에서 안전고리 미체결로 인한 작업중 근로자 추락	1.TBM시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및 안전대걸이시설 설치 안전조치 확인후 작업 2.구조물 상부 또는 단부구간 작업시 작업자 안전벨트걸고리 체결하고 작업
혹한기 외부 작업시에 동상,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 심혈관계질환 발생	작업 전/중/후 체조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 이완하고 작업 중 적절한 휴식공간 제공
철근배근작업시 배근사이 발빠짐으로 이동간에 전도	매쉬발판을 근로자 주요동선에 설치하여 동선확보
철근 양중시 유도로프 미체결로 인한 자재 하역시 주변작업자 충돌	1.양중시 전담신호수 배치 2.양중구간 내 근로자 출입을 금지
*철근운반에 따른 중량을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 자세 (꼬그려 앉는 작업자세) *철선(반생)작업시 반복적인 손목 사용 *철근 배근 작업시 무리하게 팔을 뻗는 자세	1. 1인 최대 15kg미만으로 인력작업 실시(15kg이상시 2인1조 작업) 2.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을 통한 근육이완 3.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50분작업, 10분 휴식)
자재 및 철근등 양중시 유도로프 미체결로 인한 자재 하역시 주변작업자 충돌	1.양중시 전담신호수 배치 2.양중구간 내 근로자 출입을 금지

### ■ 참석자


이름	서명
공창덕	
문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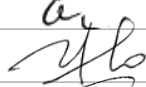




### ■ 위험등급 기준표

(공유 및 협의)

위험성 등급	위험수준	판단 기준	관리기준	허용 유무
상(★★★)	중대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발생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수 있는 위험</li> <li>산업안전보건법상 법규 준수가 어려운 경우</li> </ul>	최중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작성후 담당자 지정하여 중점위험관리활동 실시	허용 불가
중(★★)	일반적인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발생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li> <li>사고사례 및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li> </ul>	안전시설 설치, 관리감독자 배치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조건부 허용
하(★)	경미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li> </ul>	위험표지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일상관리가 필요한 위험	허용 가능

# ✓ 위험성평가 근로자 의견서

협력회사	공종	작업날짜	작성일	팀장
휘강건설	골조_콘비	2024.01.26 ~ 2024.02.01	2024. 01. 23	손원출 

위험요인	관리대책	■ 참석자	
공어치기 구간 및 단부에서 안전고리 미체결로 인한 작업중 근로자 추락	1.TBM시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및 안전대걸이시설 설치 안전조치 확인후 작업 2.구조물 상부 또는 단부구간 작업시 작업자 안전벨트 걸고리 체결하고 작업	이름	서명
혹한기 외부 작업시에 동상,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 심혈관계질환 발생	작업 전/중/후 체조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 이완하고 작업 중 적절한 휴식공간 제공	김운용	
콘크리트 타설 시 한 곳에 집중 타설로 인한 붕괴 및 근로자 추락 위험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 교육 후 한 곳에 집중하여 타설 하는 것을 금하고 이어치기 작업 실시	박길우	
수직, 수평파이프 설치불량으로 보양천막 붕괴	1.시작점 기둥 ; 고정용 가새 결속상태 확인 철저 2.비계 기둥하부와 하부베이스용 구조물 지지확인 철저 3.수직, 수평 파이프 클램프사용 및 고정 상태 확인	유양훈	
후진으로 펌프카까지 진입한 믹서트럭의 브레이크가 해제되어 펌프카 운전 보조작업 진행 중이던 작업자를 치임	1. 믹서트럭 후진 한계점을 지정하고 후진 밀림방지 썬기를 설치 운영 2. 혼잡한 장비 주변 작업자는 식별되는 안전조끼를 착용해야하며, 장비진입 시 안전장소 이동 3. 믹서트럭 후진 장소에 머무르는 작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김학수	
취니샤 가동 중 회전날에 베임	1. 해당 작업자 경력자 여부확인 및 2인 1조 작업 철저 2. 반입 전 장비상태 양호여부 확인 및 사용 중 이상 시 작업 중단 후 보수 실시	고상현	
		이병순	

■ 위험등급 기준표  
(공유 및 협의)

위험성 등급	위험수준	판단 기준	관리기준	허용 유무
상(★★★)	중대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발생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수 있는 위험</li> <li>산업안전보건법상 법규 준수가 어려운 경우</li> </ul>	최중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작성후 담당자 지정하여 중점위험관리활동 실시	허용 불가
중(★★)	일반적인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발생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li> <li>사고사례 및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li> </ul>	안전시설 설치, 관리감독자 배치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조건부 허용
하(★)	경미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li> </ul>	위험표지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일상관리가 필요한 위험	허용 가능



# 근로자 의견서 사진대지

